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 (SCAG) 민권법 6장 불만 처리 과정

남캘리포니아정부연합 (SCAG)은 연방고속도로청 및 연방대중교통청 (The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and the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의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민권법 제6장과 연방규정집 타이틀제49장 (Title 4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파트 21에 의거하여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국적에 의하여 제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및 업무활동 등의 참여로부터 제외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SCAG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지역계획을 제공함.
- 과도하게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함. 특히, SCAG 프로그램 및 업무활동에 따른 소수 인종 및 저소득층의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포함함.
- 공공투자가 여러 사회 경제적 집단에 미치는 편익과 부담을 계산하는 분석과정을 주요 업무활동의 하나로 간주하고, 편익과 부담의 불균형을 확인하며, 분석결과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함.
- 지역 계획 및 프로그램 의사 결정시에는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사회의 완전하고 공정한 개인 참여를 촉진함.
- 소수 인종 및 저소득층 혜택 프로그램 및 업무활동과 관련한 혜택의 거부, 축소, 또는 지연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함.
-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제반 프로그램과 업무활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SCAG의 Executive Director (ED) 와 직원들은 민권법 제6장에 대한 SCAG의 책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SCAG의 수석법률고문 (Chief Counsel) 은 SCAG의 민권법 제6장

준법담당관의 역할과 더불어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한 불만 접수 및 조사를 포함한 SCAG의 제반 업무를 책임집니다.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한 불만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사항 제출: 개인적으로나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민권법 제6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을 겪은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SCAG에서 제공하는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의 사본은 부록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불만사항은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만사항은 검토 및 조치를 위하여 SCAG의 민권법 제6장 준법담당관인 SCAG의 수석법률고문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a. 불만사항은 차별의 혐의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b. 불만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불만사항은 차별에 대한 정황이 가능한 한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i. 이름, 주소, 연락처 (예,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ii. 불만사항 종류 (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
 - iii. 차별 행위 발생 날짜
 - iv.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로, 장소 및 차별이라 생각하는 이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장소, 이름, 연락처 포함
 - v. 기타 중요한 정보
2. 불만사항의 검토: 불만사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SCAG의 수석법률고문은 신청인에게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제안된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연방 대중교통청에 불만사항을 제출하는 등 시정의 다른 방안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수석법률고문은 또한 SCAG의 ED에게 불만사항 접수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수석법률고문은 불만사항을 조사하거나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의 수행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불만사항의 검토는 SCAG이 불만사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수석법률고문은 신청인에게 검토 완료 예상 시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만사항 검토가 완료되면, 수석법률고문은 신청인에게 불만 접수에 대한 이점을 강조하거나,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한 SCAG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3. 재검토 요청: 신청인이 SCAG의 수석법률고문에 의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답변의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SCAG의 ED에게 재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은 신청인이 수석법률고문의 답변에 의해 이해되지 않은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상세히 열거해야 합니다. ED는 10 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ED가 재고하기로 동의한 경우, 불만사항은 ED 또는 ED가 지정한 이에 의하여 재평가될 것입니다. 서면 결정은 재심 요청이 ED의 재심 요청 승인 후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연방대중교통청에 불만사항 제출: 신청인이 SCAG의 민권법 제6장 불만 결정에 대하여 불만족할 경우, 연방대중교통청에 불만사항 조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FTA Circular 4702.1B 9장에 따르면, 불만사항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TA Circular 4702.1B 9장에는 연방대중교통청의 불만 처리가 기술되어 있으며, SCAG의 수석법률고문 (213-236-1928)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언어로 된 정보가 필요하시면 (213) 236-189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1 - SCAG 민권법 6장 불만 접수 양식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자택전화번호 _____

직장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1. 당신의 불만사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인종 [] 출신 국가 [] 피부색 [] 기타 _____

2. 사건이 발생한 날짜: _____

3. 가능한 한 명확하게 어떤 차별을 어떻게 겪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해당 차별 발생 장소와 누가 관계되어 있는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양식의 뒷면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